

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6년 8월 20일
- 회부일자 : 1996년 8월 21일

3. 제정이유

- 가.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서 「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」에 대하여
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
- 나. 충청북도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재해대책에 원활을 기하
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가.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

-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,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
-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,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
도 관련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파견된 자 등

나.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구성

-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 이상 공무원
(충청북도, 충청북도지방경찰청, 육군5019부대, 1987부대, 공군3579부대,
충청북도교육청, 충청체신청, 대전지방국토관리청, 대전·영주지방철도청,
청주지방노동사무소, 청주기상대, 기타 재해관련기관)

5. 검토 의견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과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등을 지방에서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, 날로 늘어나는 자연 재해에 대하여 지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당해 기관 지방청 소속 공무원을 실무반으로 구성하여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